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25일, 정성호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호 의원)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3 신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발생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학교의 장 등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대원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 기간이 장기인 일부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를 두려는 것으로 최근 신설된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직장·학교에서의 휴무·결석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또한,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법적인 불리한 처우 행위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그리고, 상비전력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예비전력 강화 필요성과 예

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예비군의 적극적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담 조직은 구성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국방부 내에 설치된 별도의 민원 처리 부서인 ‘국방민원센터’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고,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주요 업무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 업무는 신규로 추가되는 업무라기보다는 기존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소관 업무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군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참가 시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발생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 삭제,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내용

부칙에 휴무 처리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자구 수정이 있음.

[붙임] 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적용 예외 기간을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으로 수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 확인 시 위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며,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학교의 장 등을 고발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중 ‘설치’ 부분을 삭제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조직·인력 변경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3의 제목 중 “장기 소집”을 “비상근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비군대원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의4제3항 중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를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의5제1항 중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제10조의3(장기 소집의 휴무 등 처리)</u> <u>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예비군대원</u> <u>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u>	<u>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u> ----- ----- ----- -----<u>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신설>	<u>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u>	<u>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 ②</u> (개정안과 같음)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 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 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③ -----

	<u>자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 ④ <u>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⑤ <u>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u> <u>제10조의5(예비군권익 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u>	----- -----<u>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u>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u> <u>제10조의5(예비군권익 보장센터) ① -----</u> -----
--	--	---

<신 설>

		<u>은 이 법 시행 이</u> <u>후 비상근 예비군</u> <u>으로 선발하는 경</u> <u>우부터 적용한다.</u>
--	--	---

법률 제 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u> <u>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u>

<신 설>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
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